

●환경부령 제1034호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3년 04월 27일

환경부장관 인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본문 중 “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”을 “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”으로, “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”를 “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사업자등록증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”으로, “아니하면”을 “않으면”으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”를 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”로 한다.

별표 4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4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별표 4 제2호나목6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6)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6호	면허정지 1개월	면허정지 2개월	면허취소
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

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“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”를 “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”으로, “확인 사항 제2호를”을 “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”로, 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”를 “그 사본을 제출해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4 제2호나목6)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

정처분은 별표 4 제2호나목6)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.

◇ 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하는 한편, 기상예보사 등에 대한 가중처분의 기간 계산과 차수 산정 방법 등 행정제재의 기준을 명확화하려는 것임.